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. 7. 21 선고 2015가단38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. 2. 2 선고 2015나5948 판결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. 7. 21 선고 2015가단382 판결

전문

원고A

피고대한민국

변론종결 2015. 6. 23.

판결 선고 2015. 7. 21.

주문

1.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 목록 제1, 2,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5. 5.

19. 접수 제282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, 별지 목록 제4, 5, 6,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. 12. 27. 접수 제737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 법리

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(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이 사건에서 원고는,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,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, 피고는 위 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,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것 이외에 또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, 원고가 만일 소유권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.

2.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, 원고가 1982. 4. 20. B로부터 강원 양양군 C 일대의 토지 10,000평을 매수하였으며, 그

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1987. 7.경 D에게 모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다른 처분 없이 두었다고 주장하나, 갑 제10 내지 1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증인 E, 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, 강원 양양군 G 토지 및 H 토지가 원고 소유의 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토지와 인접한 강원 양양군 I 토지(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)도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,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(민법 제186조), 설령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,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러므로,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,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박혜림

별지